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정관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1
제2조(세계도핑방지규약의 준수)	1
제3조(정의)	1
제4조(사무소)	1
제5조(사업)	1
제6조(수익사업)	1
제7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2

제2장 임 원

제8조(임원)	2
제9조(임원의 선임)	2
제10조(임원의 직무)	2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3
제12조(임원의 임기)	3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3
제14조(임원의 선임제한)	4
제15조(위원장 등 직무대행)	4
제16조(임원의 보수)	4

제3장 위원회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및 지위 등)	4
제18조(위원회의 회의)	4
제19조(위원회 소집의 특례)	4
제20조(위원회의 의결사항)	4
제21조(위원회의 의사 등)	5
제22조(의결권 제한)	5
제23조(회의록)	5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	5
제25조(재산목록의 비치)	6

제26조(사업자금의 조성)	6
제27조(차입금 등)	6
제28조(회계연도)	6
제29조(회계원칙)	6
제30조(사업계획과 예산)	6
제31조(회계감사와 결산서 제출 등)	6
제32조(잉여금의 처리)	6
제33조(회계감사)	7

제5장 사무기구

제34조(조직 및 운영)	7
제35조(사무국)	7
제36조(파견직원)	7

제6장 각종 위원회

제37조(위원회의 설치)	7
제37조의2(특별위원회)	7
제37조의3(청문위원회)	7
제37조의4(항소위원회)	8
제37조의5(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8
제37조의6(선수생체수첩위원회)	8

제7장 보칙

제38조(정관의 변경)	8
제39조(저작권의 귀속)	8
제40조(경영공시)	8
제41조(법인해산)	8
제42조(청산인)	9
제43조(규정 적용)	9
부칙	9

별표

1.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기본재산	12
-------------------------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정관

제정	2007. 6. 22.	
개정	2008. 12. 24.	
개정	2009. 11. 16.	
개정	2013. 4. 9.	
개정	2016. 1. 29.	
승인	2016. 2. 15.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481호
개정	2016. 12. 21.	
승인	2017. 1. 10.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151호
개정	2018. 10. 26.	
승인	2019. 4. 26.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1559호
개정	2020. 12. 18.	
승인	2020. 12. 29.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6469호
개정	2021. 5. 20.	
승인	2021. 5. 24.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1719호
개정	2022. 7. 21.	
승인	2022. 7. 27.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2207호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법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도핑방지기구로서 그 명칭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Anti-Doping Agency(약칭 “KADA”)로 한다. <개정 2008.12.24., 2016.1.29>

제2조(세계도핑방지규약의 준수) 도핑방지위원회는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준수한다. <신설 2016.1.29>

제3조(목적) 도핑방지위원회는 스포츠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확립과 스포츠 정신의 고양을 도모하고,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9>

제4조(소재지) ① 도핑방지위원회의 주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개정 2016.1.29>

② 필요한 경우 국내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도핑방지위원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9., 2016.1.29>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도핑검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도핑검사결과의 관리 및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 도핑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5. 치료목적을 위한 예외적 약물 및 방법의 사용 허용기준의 수립 및 시행

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활동

제6조(수익사업)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제5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9.>

제7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제5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29.>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대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임 원

제8조(임원) ① 도핑방지위원회의 임원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 감사 1인을 두며, 위원을 이사로 본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6.1.29.>

② 다음 각 호 기관의 해당직위에 재직 중인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9.>

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개정 2016.1.29.>
2.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3.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③ 사무총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9.11.16.>

④ 당연직 위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위원회에서만 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6.1.29.>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위원과 감사는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6.1.29.>

②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하고, 그 임기는 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6.1.29.>

③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임기 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29.>

② 위원장은 도핑방지위원회를 대표하고,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29.>

④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사
2. 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위원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의견 요구
- 4. 위원회에의 출석 및 발언
- 5.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
- 6. 제5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소집 요구
- 7.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⑥ 임원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비리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를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4.9., 개정 2016.1.29.>
 -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 ⑦ 임원이 위원회 운영 관련 이외의 비리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를 정지한다. <신설 2013.4.9., 개정 2016.1.29.>
- ⑧ 상임임원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핑방지위원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9.>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2. 미성년자

② 도핑방지위원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29.>

-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9.>
-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으로서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 ④ <삭제 2021.5.24.>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9.>

- 1. 도핑방지위원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행위를 한 경우
- 3.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도핑방지위원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의를 훼손하는 행위 <신설 2016.1.29.>
- 5. 임원의 취임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16.1.29.>
- 6. 고의·태만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도핑방지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16.1.29.>
- 7. 신체 정신질환 또는 기타 사유로 1년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도핑방지위원회가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16.1.29.>
- 8. 기타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개정 2016.1.29.>

제14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위원은 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1.29.>

② 감사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직무대행) ①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9.>

② 위원장이 궐위되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은 지체 없이 위원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① 상임임원을 제외한 모든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수당, 여비 등의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6.1.29.>

② 임원의 수당, 여비 기타 실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도평방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9., 2016.12.21.>

제3장 위원회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및 지위 등) ① 도평방지위원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상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며, 공정하게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도평방지위원회 사무국 및 업무부서가 보관하는 기록, 기타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⑥ <개정 2016.1.29., 삭제 2016.1.29.>

제1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심의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부하고 회의소집을 통보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케 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소집 특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1.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0조제5항제6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16.1.29.>

3.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여 도평방지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사무총장이 요구할 때

② 위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0조(위원회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29.>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9.>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기본재산의 편입, 변경, 처분에 관한 사항
5. 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0. 제10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감사가 요구한 사항
11. 사업에 부대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2. 관련 법령, 정관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3. 기타 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위원회 의사 등) ①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도핑방지위원회 정관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경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6.1.29.>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의결권 제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1.29.>

1.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의 취임 및 해임의결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도핑방지위원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23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정기 및 임시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확인하며 서명·날인한다. <개정 2016.1.29.>

②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며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회의록을 전제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등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6.1.29.>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 ① 도핑방지위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개정 2016.1.29.>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도핑방지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도핑방지위원회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하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⑤ 기본재산의 증감 및 처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9.>

제25조(재산목록의 비치)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② 제1항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6조(사업자금의 조성) 도핑방지위원회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1.29., 2019.4.26>

1. 출연금
2. 국고 지원금
3. 기본재산의 과실
4. 사업수입
5. 지원금
6. 찬조 또는 기부금
7. 기타 수입

제27조(차입금 등) 도핑방지위원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거나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9.>

제28조(회계연도) ① 도핑방지위원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1.29.>

② 도핑방지위원회의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③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29.>

제29조(회계원칙) ① 도핑방지위원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② 위원회의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회계담당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사업연도의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방침·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도핑방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경비 <개정 2016.1.29.>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④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제31조(회계감사와 결산서 제출 등)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② 감사는 제1항의 결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제32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도핑방지위원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단, 도핑방지위원회의 기본재산에 편입할 경우, 제38조에 따른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9.>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6.1.29.>

제5장 사무기구

제34조(조직 및 운영) ① 도핑방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29.>

② 도핑방지위원회의 직제, 인사,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9., 2016.12.21.>

제35조(사무국)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이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6.1.29.>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9.11.16., 2013.4.9.>

④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1.16.>

⑤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사무국 업무를 총괄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1.29.>

제36조(파견직원) ①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기간·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핑방지위원회에 파견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각종 위원회

제37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26.>

② 자문위원회는 도핑방지위원회에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9., 2019.4.26.>

제37조의2(특별위원회 설치) 도핑방지위원회는 제37조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특별위원회로서 제재위원회,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29>

제37조의3(제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세계도핑방지규약, 한국도핑방지규정, 프로스포츠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한 공정한 청문과 결정을 위하여 제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9.4.26., 2020.12.29>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제재위원회는 5년 이상 경력의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과학전문가, 스포츠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9>

④ 위원은 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⑤ 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제37조의4(항소기구 운영) 항소는 독립된 항소기구에서 별도로 운영한다. <개정 2020.12.29>

제37조의5(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세계도핑방지규약, 한국도핑방지규정, 프로스포츠도핑방지규정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따라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의 승인 또는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2019.4.26.>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는 임상, 스포츠 및 운동의학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의사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장애인선수 치료경험이 있는 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은 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의6 <삭제 2020.12.29>

제7장 보칙

제38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6.1.29.>

제39조(저작권의 귀속)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도핑방지위원회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원저작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제40조(경영공시)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한 중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 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코자 최신의 경영정보사항을 수시로 공시하여 관련 정보의 적시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1.29.>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22.7.27.>

제41조(법인해산) ① 도핑방지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9.>

② 도평방지위원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도평방지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개정 2016.1.29., 2022.7.27.>

제42조(청산인) 도평방지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위원장은 청산인을 선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6.1.29.>

제43조(규정 적용) 이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9.>

부 칙 <2006.1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 한국도평방지위원회 설립준비팀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일) 도평방지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성 명	주 소	서 명
김건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1동 64-1 청담파크빌라 102호	
김동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동아아파트 112동 602호	
김미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53 민속마을 쌍용아파트 113동 204호	
유지열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 1동 1002호	
김재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557-6 301호	
조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3동 화곡푸르지오아파트 102동 1403호	
최경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3동 성원아파트 107동 502호	
라현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300-3 렉스아파트 15동 503호	

부 칙 <2007.6.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평방지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본 정관에 의하여 위원회 설립등기를 마치면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종전 재단법인 한국도평방지위원회의 법인은 해산된 것으로 보며 종전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 임직원 임기는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제 3 조(발기인의 기명날일) 도평방지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성명	주소	서명
김건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1동 64-1 청담파크빌라 102호	
김동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동아아파트 112동 602호	
김미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53 민속마을 쌍용아파트 113동 204호	
유지열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 1동 1002호	
김재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557-6 301호	
조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3동 화곡푸르지오아파트 102동 1403호	
최경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3동 성원아파트 107동 502호	
라현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300-3 렉스아파트 15동 503호	

부 칙 <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한국도평방지위원회 인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한국도평방지위원회” 를 “한국도평방지위원회” 로 하고, 제13조, 부칙 제1조 중 ” 문화관광부장관 “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② 한국도평방지위원회 회계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한국도평방지위원회” 를 “한국도평방지위원회” 로 하고, 제17조, 제20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6조 제1항, 제48조, 제49조제2항, 부칙 제1조 중 ” 문화관광부장관 “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③ 한국도평방지위원회 직제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한국도평방지위원회” 를 “한국도평방지위원회” 로 하고, 부칙 제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 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④ 한국도평방지위원회 보수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한국도평방지위원회” 를 “한국도평방지위원회” 로 하고, 부칙 제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 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부 칙 <2009.11.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4.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2.15.>

(시행일) 이 정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0.>

(시행일) 이 정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4.26.>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29.>

(시행일) 이 정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5.24.>

(시행일) 이 정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7.27.>

(시행일) 이 정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8.12.24., 2013.4.9., 2019.4.26.>

한국도평방지위원회 기본재산

(단위: 원)

내역	금액	비고
○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00,000	○ 출연금(10,000,000)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000,000 - 대한체육회장 2,500,000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2,500,000
계	200,000,000	